

TIPLONews 한국어본

2022 년 2 월호(K270)

K220120Y2

K220120Y3

01 CPTPP 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원은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일부 조문 개정안을 통과

대만의 CPTPP¹⁾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대만 지혜재산국²⁾은 2016 년 CPTPP 의 전신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과 대만의 현행법규와의 차이를 조사하여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일부 조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제 9 회 입법원³⁾의 임기내에 심의를 할 수 없었기에, 해당 개정안은 2020 년에 다시 행정원에 제출되어 2022 년 1 월 20 일의 제 3787 회 행정원 회의를 통과해, 입법원의 심의에 보내졌다.

1. 「저작권법」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 (1) 권리침해가 중대한 디지털 형식에 의한 불법 복제, 불법 복제물과 알면서 행하는 배포 및 무단 공중 송신은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타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저작물을 침해」, 「원작 그대로 복제」, 「권리자에게 대만화폐 100 만원 이상의 손해를 초래」하는등을 중대 침해의 세가지 요건으로 정하고 저작권자의 보호를 강화한다.(제 100 조 개정)
- (2) 광디스크의 사용이 쇠퇴하여 이미 주요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해적판 광디스크도 개정 후 제 100 조에서 말하는 디지털 형식에 의한 불법 복제물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어서 해적판 광디스크의 복제, 배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상의 복제, 배포죄의 형사책임 규정으로 되돌리고, 동시에 이와 관련한 몰수 규정을 삭제한다.(제 91 조제 3 항, 제 91 조의 1 제 3 항, 제 98 조 및 제 98 조의 1 을 삭제)

2. 「상표법」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1) 현행 상표법에 있어서, 등록 상표를 모방한 상표등의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침해 구성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통상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서 정의되는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조건으로 하는 규정으로 되돌린다. (제 68 조를 개정)
- (2) 상표 또는 단체 상표의 라벨 등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추가하고, 모방한 라벨, 포장 등을 수입하는 등의 권리 침해를 준비 및 협조하는 행위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품 판매 및 이익을 늘리고 상표 보호를 강화한다. (제 95 조를 개정)
- (3) 상품의 증명 표장을 모방하여, 타인이 행하는 권리침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의도하여 소지하는 등과 관련한, 형사책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고의」를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하여, 침해가 초래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적인 고의 행위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되돌려 사회의 정의와 기대에 부응한다. (제 96 조 및 제 97 조를 개정)(2022년 1월)

역주:

- 1) CPTPP 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의 준말로 한국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번역하고 있다.
- 2)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한다.
- 3)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며 제 9 회 임기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이다.

K220128Y4

K220127Y4

**02 대만 UMC 가 미국 Micron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건, 2 심에서 UMC 에
대만화폐 2000 만원의 벌금형 판결**

미국 Micron¹⁾이 대만 UMC 등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만 지혜재산 및 국제상사법원은 2022 년 1 월 27 일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용락천(戎樂天)씨 ³⁾에게 무죄, 피고인 하(何建廷)씨에게는 징역 1 년 및 벌금으로 대만화폐 100 만원, 집행 유예 4 년, 피고인 왕(王永銘)씨에게는 징역 6 개월 및 벌금으로 대만화폐 100 만원, 집행 유예 2 년 그리고 대만 UMC 에는 벌금으로 대만화폐 2000 만원, 집행유예 2 년의 판결을 내렸다. 지혜재산 및 국제상사법원이 발표한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법원은 고소인 Micron 이 미국 및 대만에서 중요한 세계적 하이테크 기업이며,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인재와 자원을 투입해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또 Micron 에서는 종업원과 고용계약 및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회사의 소중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산 누출위험을 줄이고 직원이 부주의 또는 손쉽게 외부에 기밀이 누설되어 향후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원교육연수에 있어서도 종업원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음을 참작했다.

피고인인 허(何)씨, 왕(王)씨는 Micron 대만법인과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범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계약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이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피고인 허(何)씨는 Micron 의 영업 비밀을 삭제, 폐기하지 않고, 복제, 사용하였고, 피고인 왕(王)씨 또한 무단으로 고소인의 영업 비밀을 복제, 사용하였고, 심지어 DR25nmS 설계 규칙의 매개변수 데이터를 피고인 UMC 의 관리자, 즉 피고인 용(戎)씨에게 누설하여 고소인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는 2013 년 영업비밀법 개정에서 형사책임규정을 추가하며 규제하려던 가장 중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허(何)씨와 왕(王)씨는 범행 후의 태도, 범죄 동기, 목적 및 수단을 참작하여, 전술한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심리 기간중에 피고인 UMC는 고소인과 화해하였으며, 고소인은 서면으로 본 사건의 친고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였고, 비친고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판결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허(何)씨, 왕(王)씨 및 UMC 는 이전에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대만고등법원의 피고인에 관한 과거 사건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피고인 UMC 도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 허(何)씨, 왕(王)씨 그리고 UMC 는 본건의 심리과정과 형판결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선고형을 잠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당하며, 이에 본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유예를 선언했다. 또한 본 법원은 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중 수시로 경계심을 높여 교훈을 배우면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형법 제 74 조 제 2 항제 5 호 규정에 따라 피고인 허(何)씨와 왕(王)씨는 별도 지정하는 정부기관, 정부기구, 행정법인, 커뮤니티 또는 그 밖의 공익목적기구 또는 단체에서 각각 200 시간, 100 시간의 사회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22.02)

역주:

1. 중국어명 美光科技公司, 영어명 Micron Technology, Inc. (Micron)
2. 중국어명 聯華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명 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UMC)

K220105Y8

K220105Z8

**03 대만과 베트남 간의 경제 무역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해 무역
촉진 협력 비망록에 서명,**

주대만 베트남 대사와 주베트남 대만 대표가 2022 년 1 월 5 일 대만의 대북에서 「대만과 베트남 간의 무역 촉진에 관한 협력 비망록」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쌍방은 경제 무역 방문단의 상호 방문에 의한 교류, 비즈니스 기회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 무역 연계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만과 베트남의 경제무역관계는 밀접하여 대만은 베트남에 있어서 4 번째 규모를 가진 무역 수입국이고, 베트남은 대만에 있어서 7 번째 무역 수출국이다. 대만과 베트남 간의 쌍방향 무역은 코로나에 의한 타격을 입은 기간에도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1 년 1~11 월의 무역총액은 181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대만의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은 125 억 달러로 34% 성장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6 억 달러로 10% 성장하였다.

대만의 대 베트남 수출품에는 집적 회로, 광학 렌즈, 인쇄 회로,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메모리 등이 포함되며, 베트남에서 대만으로 수입되는 품목에는 휴대 전화,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의류, 기계류, 신발을 포함한다. 대만과 베트남간의 무역은 투자 및 공급 체인면에서 상호호혜적이고 보완적인 제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대만 기업은 약 4000 사에 이르며, 그 8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주로 대만에서 기계설비, 원재료 및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대만 전자산업은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관련 전자부품을 대만에서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조립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인하여 쌍방은 향후 협력을 확대하고 전문 무역 전시회를 개최하고, 양측의 좋은 제품 이미지 (Taiwan Excellence 와 Vietnam Value)를 넓히고, 나아가 시장 정보와 무역 방문단의 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매칭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재육성을 실시하여 보다 강화된 무역 협력과 시장 개척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쌍방의 무역 수지 균형화도 진행되고, 베트남의 좋은 품질의 농산물 및 공업 제품이 대만 시장에 소개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22.01)

